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후단 중 “점포”를 “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”로 한다.

제25조제3항 중 “징수 및 환급”을 “징수”로 한다.

제27조제4항 및 제5항 중 “제28조제1항”을 각각 “제28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공사,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한국가스공사는 제1항”을 “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및 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징수·이의신청 및”을 “징수·이의신청, 한국석유관리원은”으로 한다.

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항 중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,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「한국석유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석유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항 중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·충당에 관한 사무를 법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(이하 “한국석유관리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illegible]

는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공급 받거나 주유소에 직접 판매하는 일반판매소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.

5. ~ 11. (생략)

제25조(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) 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내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27조(부과금의 환급 등) ① ~ ③ (생략)

④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한국은행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

-----.

5. ~ 11.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징수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부과금의 환급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제28조제2항 -----

-----.

⑤ ----- 제28조제2항 -----

받은 경우에는 즉시 「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」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(移替)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⑥ · ⑦ (생략)

제28조(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,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·충당 및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「한국석유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석유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에 위탁한다. 다만, 부과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는 해당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의 확인: 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(이하 “한국석유관리원”이라 한다)

가.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

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ten horizontal dashed lines, typical of primary-ruled notebook paper.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.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.

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항 중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,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「한국석유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석유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에 위탁한다.

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한 양
나.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
석유제품(같은 호에 따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
시하는 석유제품에 한정하
다)을 국내에서 생산하여
공급한 양

다.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7
호에 따라 석유제품 현물
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
한 양

2. 제2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
에 따라 공급한 천연가스 양
의 확인: 「한국가스공사법」
에 따른 한국가스공사(이하
“한국가스공사”라 한다)

<신 설>

② 공사, 한국석유관리원 또는
한국가스공사는 제1항에 따라
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
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
20조제1항에 따른 사항 중 부과
금과 과오납금의 환급·충당에
관한 사무를 법제25조의2에 따
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(이하
“한국석유관리원”이라 한다)에
위탁한다.

③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은
제1항 및 제2항-----

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③ 공사는 매월의 부과금 징수·이의신청 및 환급에 관한 상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----.

④ ----- 징수·
이의신청, 한국석유관리원은 --

---.